

문 의	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활용과	과 장 김일규 042-481-5258 사무관 서정일 042-481-3478
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2020년 3월 18일(수) 오전 9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

2020년도 ‘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’ 시행

- 코로나 19 피해기업 대상 ‘우수발명품’ 인증유효기간 연장 및 로고 공개-

□ 특허청(청장 박원주)은 2020년도 ‘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○ ‘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(이하, ‘우수발명품 추천사업’)*은 특허청이 인증한 중소기업의 ‘우수발명품’을 정부·지방자치단체 등에 우선 구매하도록 추천하는 사업이다.

* 중소기업 발명품의 우수성을 심의, 우선구매추천은 연간 4회, 신청비 무료

○ 신청자격은 지식재산권(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)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로서, 지식재산권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.

○ 이번 사업의 신청은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‘한국발명진흥회’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, ‘우수발명품’으로 선정되면 인증유효기간 3년 동안 수익계약이 가능한 ‘조달청 우수제품’ 지원 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□ ‘우수발명품 추천사업’ 신청률은 2017년 이후 연간 40%씩 증가*하는 등 중소기업의 관심을 바탕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.

* ‘17년 220건 → ‘18년 303건 → ‘19년 433건

- 그간('1995~'2019) 선정된 우수발명품은 1,400여개, 납품금액만도 1,800억원에 이른다.

□ 한편, 특허청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기업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* 등 객관적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3년의 인증유효기간에서 피해기간만큼 추가연장하기로 했다.

* 기간연장(피해발생일~정부의 코로나 19 종식 선언일) 대상은 피해발생일이 우수발명품 인증기간 만료일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

□ 이와 더불어 특허청은 '우수발명품 추천사업'의 '우수발명품' 인증에 사용될 로고(🌀)를 공개했다.

- '우수발명품' 로고는 영문표기 Good Invention의 'G'에 발명을 연상시키는 '돋보기'와 글로벌화를 상징하는 '지구'를 결합한 형태이다.

- '우수발명품' 로고는 우수발명품임을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달청 '혁신장터'*와 '벤처나라**', '나라장터 종합쇼핑몰'***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.

* 국가 R&D 혁신제품 및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 거래장터

** 벤처·창업기업 우수제품 거래장터

***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한 업체제품 거래장터

□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“우수중소기업이 ‘우수발명품 추천사업’을 통한 초기 판로확보로 사업화의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※ 붙임 1 : 우수발명품 로고

붙임 2 :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개요


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활용과 서정일 사무관(☎042-481-347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우수발명품 로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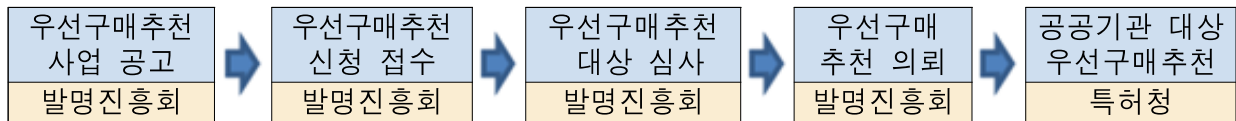
붙임 2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국가기관, 지자체 등에 우선 구매하도록 추천하여 공공시장 판로개척 지원 및 기술개발 촉진

발명진흥법 제39조(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)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)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.

<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 절차 >



- (신청자격) 등록된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의 소유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·통상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
- (운영현황) '95년부터 발명진흥회와 사업을 수행하며, 연중 4회 중소기업에서 신청한 발명품의 우수성을 심의하여 추천 대상 중소기업 선정
- 제품의 기술성 및 사업성 검토를 위해 해당기술 분야별 산·학·연 외부 전문가 4인 이상으로 심사위원 구성

< 우선구매추천 우수발명품 선정 심사기준 >

심사항목	세부항목	배점	심사지표
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(30)	기술의 고도성	10점	기술의 난이도 및 기존기술 대비 우위성
	기술의 차별성	10점	기존기술 대비 차별성 및 대체성
	품질의 우수성	10점	경쟁상품 대비 품질의 우수성
구매 효과성 (30)	가격경쟁력	10점	경쟁상품 대비 가격의 적정성
	대체우위성	10점	효율성, 경제성, 상품수명의 우위 및 수입대체 효과 등
	상품의 시장성	10점	상품시장의 규모, 성장가능성
품질보증 및 물품공급 능력 (40)	제품보증능력	10점	품질관리, 인증 유무 및 품질보증능력
	생산 및 공급능력	10점	인력보유 및 생산시설 확보
	사업화 추진능력	10점	경영전략과 판매실적, 판로 대책 및 소비자 수요 파악 등
	구매실효성	10점	제품공급의 적시성, 예상수요처 및 수요 예측의 구체성 등

* 각 심사위원 평가점수 합산 평균이 “80점” 이상인 경우 추천대상 우수발명품 선정